

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: 전승관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1조제1항 및 제2항